

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9. 9. 23. 동두천시장의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. 9. 28.

다. 상정일자 : 제1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2차 본회의 상정, 토론 및 검토

제3차 본회의 상정, 검토 및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·견학·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
-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여 프로그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 근거마련(안 제23조2)
-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확대(안 별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 및 같은 법 제24조(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)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“원안가결”